

#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의안 번호	876
----------	-----

발의연월일 : 2009. 9. 14.

발 의 자 : 김용근·윤지상·박창규 의원  
(찬성자 14인)

## 제안이유

가. 청소년들의 밝고 건전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수상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 효행, 선행, 면학, 장애극복, 예·체능 등 수상부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학교장, 사회단체장 및 청소년 단체장으로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전까지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시상은 매년 1회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동일공적으로 기 수상한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함.(안 제8조)

##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대상, 효행, 선행, 노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자) ①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대상 : 당해년도 수상후보자중 효행, 선행, 노력 등 여러면에서 성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자
2.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자
3. 선행부문 : 남을 위하여 선행을 많이 한 자
4. 면학부문 : 역경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
5. 장애극복부문 : 장애극복에 귀감이 되는 자
6. 예체능부문 :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자

② 수상인원은 제1항 제1호의 대상 1명과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부문별 부문상 1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학교장, 사회단체장 및 청소년단체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전까지 청소년대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상) ① 청소년대상은 매년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7조(기록 보존) 시장은 청소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이중 포상금지)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9조(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회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청소년기본법 - 제3조(정의) - 제16조(청소년의 달)  <input type="checkbox"/>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청소년의 달 행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청소년단체 등이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